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5, 제2조의6 및 제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와 예산
2.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3. 정책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4. 그 밖에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3조의5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3. 그 밖에 벤처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법 제3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들어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하여”를 “들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12부터 제11조의20까지를 각각 제11조의13부터 제11조의21까지로 하고, 제1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체결한다.

1.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받고, 성과나 보유기간 등 조건의 달

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 해제 또는 주식 환수가 이루어지는 계약

2. 성과나 보유기간 등 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받는 계약

② 벤처기업이 법제16조의19제1항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제11조의18(중전의 제11조의17)제2항 중 “제11조의16제1항”을 “제11조의17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를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3제6호의2 중 “제11조의13”을 “제11조의14”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3 중 “제11조의14”를 “제11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1조의16”을 “제11조의1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u>시행령</u> <u><신 설></u>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 <u>시행령</u> <u>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u> <u>·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u> <u>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u> <u>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u> <u>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u> <u>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u> <u>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u> <u>1.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와 예</u> <u>산</u> <u>2.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u> <u>및 자격조건</u> <u>3. 정책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u> <u>지원 내용</u> <u>4. 그 밖에 벤처기업 활동에 유</u> <u>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u>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u>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u> <u>사업의 종류) 법 제3조의5제5호</u> <u>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u>
<u><신 설></u>	

<신 설>

말한다.

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 ·

자문 및 교육

2.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3. 그 밖에 벤처기업의 경영안

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6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

가.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법 제3조의5에 따른 벤처
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
다)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
어 있을 것

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
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
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벤
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전
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
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
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
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3조의6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① -----

----- 들어

-----.

②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목적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 ⑤ (생략)

<신 설>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삭 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체결한다.

1.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받고, 성과나 보유기간 등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 해제 또는 주식 환수가 이루어지는 계약

2. 성과나 보유기간 등 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받는 계약

②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19제1항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제11조의12 ~ 제11조의16 (생략)

제11조의13 ~ 제11조의17 (현행 제11조의12부터 제11조의16까

제11조의17(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6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의18 ~ 제11조의20 (생략)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1. ~ 5. (생략)

지와 같음)

제11조의18(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1조의17제1항

-----.

제11조의19 ~ 제11조의21 (현행 제11조의18부터 제11조의20까지와 같음)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

----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의2. (생 략) 4. ~ 6. 삭 제 6의2. 제11조의13에 따른 집적 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 6의3. 제11조의14에 따른 집적 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7. 제11조의16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6의2. 제11조의14----- ----- ----- 6의3. 제11조의15----- ----- ----- ----- ----- 7. 제11조의17-----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706